

2015년 강소·중견기업 청년 취업인턴제 인턴 참여자 자격

【 ‘강소·중견기업 청년 취업인턴제’ 란? 】

15세 이상 청년층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강소·중견기업의 인턴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년층에게 질 높은 일자리를 제공하고, 정규직전환 및 고용유지를 제고하기 위해 실시하는 청년고용촉진 지원사업입니다.

【 인턴 참여자 자격 】

1. 대상 : 인턴신청일 현재 미취업 상태에 있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자

- 18세 미만인 자는 근로기준법 제 66조 규정에 의거 연소자증명서(친권자 동의서, 가족관계기록사항)를 확인.
- 인턴 신청일 이전 퇴직하였으나 사업주의 고용보험 미신고, 신고 지연 등으로 인해 인턴신청일 당시 취업상태인 경우에는 사실관계 파악 후 참여 가능.
- 만 35~39세에 해당하는 자도 고용센터장이 부득이한 사정 또는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턴참여 가능.
-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연령은 만 39세로 정함.
- 다만, 학교 휴학자로서 실업상태에 있는 자, 대학·대학원의 마지막학기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, 방송·통신·방송통신·사이버·야간 학교에 재학 중인 자는 참여할 수 있다.
- 고교재학생(고교 졸업예정자를 말한다)은 청년인턴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. 다만, 체계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갖춘 일학습병행기업 및 체계적 현장훈련기업에 한해 청년인턴제 참여를 허용.

2. 제외대상

- ① 최종학교 졸업 후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 경력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인 자. 다만, 다음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피보험 경력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 - (ㄱ) 최종학력이 고졸이하(졸업예정자, 대학 중퇴자 포함)이거나, 대학 휴학생 및 대학졸업예정자
 - (ㄴ) 구직활동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장기 청년실업자(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)
 - (ㄷ) 기초생활 수급대상 가구의 청년, 취업성공패키지 I 유형 참여 청년 등 취약계층 청년
 - * 저소득층(기초생활수급자, 최저 생계비 150% 이하), 취약계층(결혼 이민자, 북한이탈주민, FTA 피해 실직자, 여성가장 등)
- ② 특정 자격증 취득의 전제가 되는 현장실습 등에 참여중인 자
- ③ ‘병역법’에 의한 특례근무 중인 자, 다만 특례근무로 전환된 이후 계속 근무 시 중도탈락으로 보지 아니한다.
 - ※ 인턴 참여 중 특례근무로 전환된 자는 전환된 날로부터 참여자격 배제
- ④ 이 사업의 인턴으로 참여하여 약정이 중도 해지된 후 1회 재참여한 자.
- 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
 - ※ 다만,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(F-2), 영주(F-5), 결혼이민자(F-6) 체류 자격자는 가능
- ⑥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턴으로 채용되었던 자
- ⑦ 채용예정인 기업의 사업주와 직계비속, 형제·자매 관계에 있는 자
- ⑧ 인턴신청일 현재 사업자 등록중인 자.

3. 특정 인턴참여자격 제한

- ① 당해기업에서 취업한 경우(단, 3개월 이내 일용직이나 단기간으로 근무한 경우 제외)
- ② 당해기업에서 병역특례로 근무한 경우
- ③ 당해기업에서 현장연수(실습)나 교육훈련, 직장체험을 3개월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
- ④ 간호(조무)사, 이·미용사, 운전기사, 보육교사, 사회복지사 등의 면허·자격을 가지고 당해 면허·자격을 가지고 당해 면허·자격을 요건으로 하는 직위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경우